

불법 점유(퇴거) 통지

귀하의 임대인이 귀하를 퇴거시키기 위한 법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

**조치를
취하세요!**

귀하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주말 또는 법원 공휴일을 제외하고 **10일**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.

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.

**도움을
받으세요!**

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- Bay Area 법률 구조단 (510) 663-4744
무료 전화: 1-877-346-4529
- Centro Legal de la Raza (510) 437-1554
- East Bay 지역사회 법률 센터 (510) 548-4040
- 퇴거 방어 센터 (510) 452-4541

California주 변호사협회(State Bar of California)는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인증하고 카운티별로 구성된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 목록을 게시합니다. 귀하의 카운티에서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찾으려면 California주 변호사협회 웹사이트 www.calbar.ca.gov를 방문하거나 1-866-442-2529로 전화하십시오. Alameda 카운티의 경우 <https://www.acbanet.org/need-a-lawyer/>로 이동하거나 510-302-2222로 전화하십시오.

**셀프
헬프:**

법원 웹사이트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: <https://www.alameda.courts.ca.gov/self-help>.

또한 Hayward 법원 청사, 24405 Amador St, Hayward, CA 94544에 위치한 법원의 셀프 헬프 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(510) 272-1393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.

Espanol



www.alameda.courts.ca.gov/

粵語



www.alameda.courts.ca.gov/

봉인된 사건에 대한 접근 관련 통지:

민사 소송법 제1161.2조에 따라 사건 파일은 다음 사람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- 1.) 소송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
- 2.) 당사자 중 한 명의 변호사
- 3.) 서기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기타 사람: (a) 해당 소송에 참여한 최소 한 명의 원고 및 피고 한 명의 이름 및 주소(해당되는 경우 아파트, 유닛 또는 구역 번호를 포함한 해당 부동산), (b)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이름 또는 사건 번호, 적절한 신원 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.

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발부된 일방적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 제기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 색인, 소송 등록부 또는 기타 법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

우편 발송 증명서

아래 명시된 위 법원의 행정 책임자/서기인 본인은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, 표준 법원 관행에 따라 해당 문서가 California주 _____에 있는 법원의 미국 우편에 접수되도록 수거 및 우편 발송을 위해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날짜에 불법 점유(퇴거) 통지를 아래 명시된 각 당사자 또는 변호사,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"모든 거주자"에게 송달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본 문서에 접수/등록된 원본의 사본 한 부는 우편 요금이 전액 선납된 상태로 아래 표시된 각 주소로 개별 봉인된 봉투에 담겨 발송되었습니다.

날짜: _____

담당자: _____